

<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>

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

- 1)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.
 - 재가급여 : 17명
- 2) 입소 대상 : 장기요양등급 2~5등급(재가급여) 판정을 받은 자
- 3) 모집 방법 :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

2.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- 1) 계약 당사자 : 전포어르신주간보호센터장, 신원인수인(주보호자)
- 2) 계약기간 :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
- 3) 계약목적 :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재가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
- 4) 계약방법 :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

5)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-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
-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
-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
- 무단 결석 15일 이상 시

6)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
-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
-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
-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신변 이상 시,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
7) 퇴소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.

-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
-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
-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-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, 전원이 필요한 경우
-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주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을 논의하는 등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 상환일,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.)
- 의료기관 등에 1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
-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
-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

- 1)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 급여비용 (2026.1.1.기준)
 - 2등급: 64,590원 - 3등급: 59,640원 - 4등급: 58,010원
 - 5등급: 56,360원
- 2) 비급여 1일 단가(중식 1회 / 간식 1회)
 - 4,000원(중식재료비 3,000원 / 간식 1,000원)
- 3)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
 - 2등급 : 2,331,200원
 - 3등급 : 1,528,200원
 - 4등급 : 1,409,700원
 - 5등급 : 1,208,900원

*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"장기요양위원회"가 결정,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